

4) 임용업무처리 기타 세부사항

가) 선발 전형(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)

1차 서류전형(서면심사 포함) → 2차 면접(필수) → 3차 수업실연(학교 여건 고려)
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(필수) 등 → 전형결과 보고(내부결재) → 채용 결정

- ①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필수절차를 제외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또는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
- ②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채용계획, 채용공고,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(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유를 명확히 함). 서류전형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함.
- ③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,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, 또는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교사를 기간 단절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에는 공고 생략 가능함
(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)
- ④ 홈페이지 채용 공고 :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하지 않음. 다양한 구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 공개채용 실시
※ 기간제교원 구인 채널 : 기간제교원 NEIS 인력풀,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채용정보-구인-기간제교원), 각종 취업포털
- ⑤ 면접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지원자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은 지양함
- 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 이행(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시행(2022.5.19.) 감사관 -9767(2022.7.7.)호)
 -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하여야 함(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호 서식]제출)
 -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(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로부터 확인서(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)를 제출받아야 함
※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'채용대상자'를 대상으로 받음이 원칙임
- 나) 가산점 부여 :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가 채용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
 - ① 근거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8조(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)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2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 경기도교육청 총무과-790(2016.01.11.)호,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-177(2016.01.07.) 「국가유공자법 시행령」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및 보훈지청 명칭 변경 안내